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0
----------	------

제출연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적정규모학교 설립 및 혁신적인 교육공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지방서기관 정원책정이 승인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 전담부서의 장인 지방서기관 1명을 정원의 총수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증원 책정함(안 제2조 및 별표 3)
- 나.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3]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2017. 9. 16. ~ 10. 5.)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112명” 을 “7,11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647명” 을 “6,648명” 으로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7,113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650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9		28	11	
4·5급	6		6		
5급 이하 소계	6,569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비고>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11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2.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u>6,647명</u></p> <p>3. (생략)</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113명</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u>6,648명</u></p> <p>3. (현행과 같음)</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112</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649</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3</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38</u></td> <td></td> <td><u>27</u></td> <td>11</td> <td></td> </tr> <tr> <td>4·5급</td> <td>6</td> <td></td> <td>6</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2</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49</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8</u>		<u>27</u>	11		4·5급	6		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113</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650</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3</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39</u></td> <td></td> <td><u>28</u></td> <td>11</td> <td></td> </tr> <tr> <td>4·5급</td> <td>6</td> <td></td> <td>6</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3</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50</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9</u>		<u>28</u>	11		4·5급	6		6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2</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49</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8</u>		<u>27</u>	11																																																																																																																					
4·5급	6		6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3</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50</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9</u>		<u>28</u>	11																																																																																																																					
4·5급	6		6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5급 이하 소계	6,569					5급 이하 소계	6,569				
전문경력관 소계	9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410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410				
<u><신 설></u>						<u><비고>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u>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지방서기관 1명 증원으로 인건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지방서기관)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황혜은(02-399-9357)

【별첨 3】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담당관 이상
2.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